

착공신고서

※ 뒤쪽의 유의사항 및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. (앞쪽)

접수번호	접수일	처리기간	1일
------	-----	------	----

신 고 인		법인등록번호	
		생년월일	
주 소	(전화번호:)		
승 인 번 호		승인일자	
대 지 위 치		지 번	
착공예정일		사용검사 예정일	

※ 주택단지를 분할 건설·공급하여 분할 사용검사를 하는 경우 착공신고 대상 공구 외의 공구에 대한 착공예정일(착공된 공구는 착공일)도 구분하여 적습니다.

설 계 자 ①	성 명	(서명 또는 인)	면 허 번 호	
			등 록 번 호	
	사무소명		도 급 금 액 (계약일자)	() 원
	주 소	(전화번호:)		

공사시공자 ②	성 명	(서명 또는 인)	면 허 번 호	
			등 록 번 호	
	회 사 명		도 급 금 액	원
	법인등록번호 (생년월일)		도 급 계약일자	
	주 소	(전화번호:)		

공사감리자 ③	성 명	(서명 또는 인)	면 허 번 호	
			등 록 번 호	
	법인등록번호 (생년월일)		도 급 금 액 (계약일자)	() 원
	주 소	(전화번호:)		

④관계전문기술자				
분 야	자 격 증	자 격 번 호	주 소	
[] (서명또는 인)				
[] (서명또는 인)				
[] (서명또는 인)				

「주택법」 제16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착공신고서를 제출합니다.

신고인
(서명 또는 인)

년 월 일

국토교통부장관, 시·도지사, 시장·군수

귀하

첨부서류	1. 사업관계자 상호간 계약서 사본 2. 흙막이 구조도면(지하 2층 이상의 지하층을 설치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) 3. 「주택법 시행령」 제43조제1항에 따라 작성하는 설계도서 중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도서 4. 감리자(「주택법」 제43조제1항에 따라 주택건설공사 감리자로 지정받은 자를 말합니다)의 감리계획서 및 감리의견서 ※ 다만,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서류는 주택건설사업의 경우만 해당합니다.	수수료 없음
------	--	--------

근거법규

「주택법」 제16조제2항	「주택법」 제15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사업주체가 공사를 시작하려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승인권자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.
---------------	--

유의사항

「주택법」 제16조 제1항·제3항, 제106조제3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5	1.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사업주체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공사를 시작하여야 합니다. 다만, 사업계획승인권자가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업주체의 신청을 받아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1년의 범위에서 가목 또는 나목1)에 따른 공사의 착수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. 가. 「주택법」 제15조제1항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경우: 승인받은 날부터 3년 이내 나. 「주택법」 제15조제3항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경우 1) 최초로 공사를 진행하는 공구: 승인받은 날부터 3년 이내 2) 최초로 공사를 진행하는 공구 외의 공구: 해당 주택단지에 대한 최초 착공신고일부터 2년 이내 2. 사업계획승인권자는 제1호[나목2)는 제외합니다]에 따라 공사를 시작하지 않은 경우 사업계획승인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. 3. 착공신고를 하지 않고 공사에 착수하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됩니다.
---	--

작성방법

1. ① ~ ③ 다수인인 경우 "○○○ 외 ○인"으로 적으며, "○○○ 외 ○인"의 현황도 제출합니다.
2. ④ 「건축법」 제6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1조의3에 해당하는 경우에 대지의 안전, 건축물의 구조상 안전, 건축설비의 설치 등에 대한 협력을 받은 관계전문기술자를 적습니다.

처리절차

